2025년 상주시가족센터 1인가구 동아리 지원 '취향공유' 지침서

1. '취향공유' 운영 안

- 1. 구성원은 1인가구 과반수로 구성된 4인 이상 동아리여야 한다.
- 2. 한 달 1회기 이상 정기적 모임을 주최해야 한다.
- 3. 1회기 이상 사회적 환원 활동을 필수로 한다.
- 4. 월 1인당 20,000원 활동비를 지급한다.(동아리별 최대 100,000원 지급)
- 5. 활동계획서, 활동일지, 지출 증빙자료 등은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.
- 6. 사전 안내, 성과 공유회 일정 시에는 구성원 전원 참석해야 한다.
- 7. 영리·종교·정치·그 외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, 각 종 서류 2회 이상 지연 등의 경우 활동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.

2. 활동비 지급안내

- 1. 활동비는 선 지출, 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되며, 지출일 기준 익월에 지급된다.
- 2. 활동비는 현금으로 지출이 원칙이며 이를 지급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. L 지출 목록, 수량이 기재된 영수증, 현금지출증빙 영수증(사업자번호: 511-82-05665)
- 3. 1회기 지급액은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되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가능하다.
- 4. 식비 및 다과비는 전체 활동비 50% 이내에 사용가능하다.(단, 동아리 특성에 따라 예외 가능)
- 5. 아래 사항 및 업소에 대해서는 지출이 불가하다.
 - 1) 모임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물품 구입 등
 - 2) 공공요금, 통신요금, 기자재구입비, 경상운영비 등
 - 3) 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기타 주점: 단란주점, 바, 클럽, 나이트클럽, 포장마차, 간이주점, 맥주전문점, 생맥주집, 선술집 등 (일반 음식점에서 주류 구입 불가)
 - 4) 위생업종: 미용실, 네일아트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
 - 5)사행 및 기타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, (스크린)경마, 총포류 판매 등

1인가구 사업대상

1순위: 혼자 생활하는 단독 1인가구

3.

2순위: (비혈연)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 1인가구 (예: 친구 등과 동거 중인 가구)

3순위: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**분거 1인가구(예: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구성되어 있으나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는 가구)**

4순위: 2년 이내에 혼자 생활할 계획이 있는 예비 1인가구(예:부모님 등과 동거중이나 출가 계획이 있는 가구)